

[붙임 2]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최수민	단체명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22 304동 1204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10-3836-1266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지역교육정책과’를 ‘벽개기 협력과’로 과명 변경하는 것을 다른 명칭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지역사회와의 경계를 없애고 지역사회(지자체)와 교육정책을 함께 협업,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과명을 변경하고자하는 취지는 좋지만, 과의 소관업무를 과명으로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업무, 돌봄, 방과후 등의 업무를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초등교육과, 진로직업교육’ 등에서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마을협력과’에서 주축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같은 곳에서도 관련 마을공동체교육 업무에 대한 것은 ‘진로교육’, ‘학교-지역사회 파트너십’, ‘커뮤니티 연계’ ‘지역교육협력’ 드 ‘학생지원 서비스’, ‘직업교육’ ‘커뮤니티 스쿨’ 등의 표현이 섞인 것으로 과명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쉽게 관련 업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 ‘학생지원 및 지역연계’ 이 과명에 포함되는 것이 소관업무의 대표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8월 5일

제출자: 성명 최 수 민 

경기도교육감(행정관리담당관) 귀하